
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

(앞 쪽)

진단정보	상병명	상병코드				
의료보장	<input type="checkbox"/> 건강보험가입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급여수급자 ([]1종/ []2종)					
신청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조기기구입비 <input type="checkbox"/> 인공호흡기 대여료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침유발기 대여료 <input type="checkbox"/> 간병비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조제분유 <input type="checkbox"/> 저단백즉석밥 <input type="checkbox"/> 옥수수전분					
등록 대상자 (환자)	성명		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				
	전화번호			휴대폰번호		
	대상자 (환자) 계좌	금융기관:	예금주:	계좌번호:		
신청인 (대리신청인)	성명			주민등록번호		
	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족 및 친족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건소 공무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환자와의 관계:) ※ 기타 : 가족,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		전화번호		
환자가구	환자와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	동거여부	전화번호
부양의무자 가구	환자와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	가구원수	전화번호

환수조치 시 안내

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할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
확인(√ 체크) []

유의사항

-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 등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, 조사를 2회 이상 거부, 방해, 기피할 경우에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원 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확인(√ 체크) []

지원개시일

- '지원신청일'이 '지원개시일'이며, '지원신청일'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.

확인(√ 체크) []

본인(대리신청인 포함)은 환수조치 시 안내, 유의사항, 지원개시일에 대하여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, 위와 같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신청인) : (서명 또는 인)
신청인과의 관계 : (대리신청의 경우)

보건소장 귀하

환자 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2.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(해당자에 한함) 3.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: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4.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 5. 자동차보험계약서(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) 6. 지원대상자(환자)의 통장사본 7. 건강보험 자격확인(보건소에서 '행정정보공공이용'을 통해 확인 (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))
부양의무자 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: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2. 임대차계약서 3. 자동차보험계약서(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)
부양의무자 제출서류 (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조사 면제자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 2.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 3. 차상위계층 확인서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 4. 한부모가족 증명서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보건소 담당자 확인 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회보장 자격확인(건강보험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) :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선 확인 2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의료급여 등) :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선 확인 3. 주민등록등·초본 :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선 확인 4. 자동차보험계약서 등 소득재산관계 서류(해당자에 한함) :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우선 확인 5. 금융재산관계 서류(해당자에 한함) :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우선 확인 <p>※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는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</p>